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205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8일  
교육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0월 20일, 이종태 의원
-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 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종태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지난 2025년 5월 15일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」에 따라 조례 제명이 「시립학교」에서 「공립학교」로 일괄 개정됨.
- 이에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중 제1조 및 제2조

의 ‘서울특별시립’ 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’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개정 사항 반영(안 제1조~제2조)

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이종태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205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서울특별시립’ 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’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 안 제1조 및 제2조는 ‘서울특별시립’ 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- 지난 2025년 4월 30일,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」는 시민이 조례의 소관 기관과 적용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제

명에 기관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.

- 그러나 당시 일괄 개정 조례는 조례 제명만 개정한 것으로 개별 조례 조문에 포함된 ‘서울특별시립’은 개정되지 못하였는바, 금번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 조항에 ‘서울특별시립’으로 규정된 내용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- 이에 동 개정조례안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명 개정과 연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립” 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<u>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----- ----- ----- -.</p>
<p>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 ① <u>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·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구성 · 운영한다.</u></p>	<p>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 ① <u>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~ ④ 생략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